

●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40호**

2026년 5월 2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29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**개선권고 재결공고[인천해심 제2026-020호(어선 서원호 선원사망사건)]**

사 건 명 : 어선 서원호 선원사망사건

피요청자 : 박\*\*(\*\*\*\*. \*\*. \*\*\*)

층\*\*\* \*\* \* \*\* \*\* \*\*

귀하가 선원으로 승선 중이던 서원호가 2023. 12. 1. 22:48경 전라북도 군산시 연도 등대로부터 262도 방향, 거리 약 10해리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 불롤러 양망기에 자루그물 끝부분 연결줄을 불롤러 사이에 끼우고 있던 선원의 신체가 회전하는 불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작업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, 불롤러 양망기를 작동하던 귀하가 부주의하여 불롤러 양망기를 빠르게 회전시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는 불롤러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작동할 때 함께 일하는 선원을 주의하여 살피고, 안전한 속도로 기계를 작동하도록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따라서 귀하에게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